제774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교육부)	1.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추가, 급여 및 임용 결정시 고려사항 확대 등)(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임용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기존 직무에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추가○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평가 사항 추가 4. 지도경력(기존 제3조제2항의 내용을 이동) 5.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6.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7.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8. 학생선수 대상 훈련 프로그램의 질 9.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10.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2.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신설)○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 시간,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 (방법)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실시 - (시간)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 - (내용)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등으로 함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1.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기준 설정(신설) o 지상파방송-유료방송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제5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안 제1호로 통합하고, 지상파 규제수준을 현행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규제 차이 해소	1.비중요
3	5·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국가보훈처)	1.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정의, 회계처리 원칙(신설) ○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계 연도 및 출납기한 정의 ○ 회계처리 원칙으로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도입 2.예산의 편성 및 제출(신설) ○ 예산 총계주의 및 예산 과목 설정 ○ 예산 처리 기한 및 보고 의무 설정 3.수입 및 지출 사무 규정(신설) ○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정하고, 수입 및 지출 행위 방법 규정 4.결산의 확정 및 제출(신설) ○ 결산보고의 절차 및 기한을 정하고, 결산보고시 필요 서류의 종류 및 서식 규정 5.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통제(신설) ○ 기부금의 범위 및 기부금 관리 원칙을 정함(안 제24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전용계좌 처리 방식을 규정함(안 제25조) ○ 기부금의 후원자 지정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6조) 6.감사 연한 설정 및 감사결과 보고의무 신설(신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임원인 감사의 필수 직무 사항을 규정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보고의무 설정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보훈처)	1.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신설) ○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등을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사항으로 규정함 ○ 종래에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시 부가하던 부관(附款)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 행정을 도모하며, 승인조건(부관) 위반을 시정조치 명령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6조 참조) ○ 승인 또는 승인된 내용 중 변경승인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무효, 취소,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효력이 없으면 변경승인도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변경승인의 효력은 승인의 효력에 종속하는 것임을 밝힘 ○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 변경' 등의 사항을 신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고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미하거나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부적절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로 갈음함 ○ 변경사항 신고를 그 변경 전에 행한 경우로서 변경사항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81조에 따라 그 내용 및 이유를 보고하도록 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함 2.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승인의 취소 등(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으로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직접생산·수행을 규정하고, 수의계약 권한이 있는 보훈단체·자활용사촌·자활집단촌과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수익사업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사업 관련 단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되,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함 ○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며, 수익사업 승인서의 서식을 정함 ○ 최초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되, 유효기간 연장시 연장기간은 해당 수익사업의 적정성,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 유효기간 연장시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 해당 수익사업 관련 각종 증명서류의 잔여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0시로부터 1년에서 3년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함 ○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함 ○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9개월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내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함 ○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없이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게 함 ○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에 대한 검토 후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익사업의 직접운영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하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심사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게 하고, 그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하며,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하게 함 ○ 수익사업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 관련 세부기준을 안 별표 4와 같이 규정하고, 안 별표 4에는 수익사업 승인취소·정지 명령·시정조치 명령·행정지도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함 ○ 행정처분 중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은 수익사업 유효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함 ○ 수익사업 정지 명령시 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지기간 후 수익사업의 원활한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재개를 가능하게 하여 수익사업 정지가 단순히 불이익을 부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함 ○ 법 제6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된 수익사업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 사유를 규정함(‘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등) ○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잔여 계약업무”이라 한다)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등)를 명시하고, 잔여 계약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계약의 상대방·해당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함 ○ 국가보훈처장이 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계약을 특정하여 행정처분서에 명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5·18민주유공자단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게 함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회계감사 대상사업 및 감사기간 규정(신설) ○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회계감사 대상사업임을 규정함 ○ 공인회계기관은 5·18민주유공자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4.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 규정(신설) ○ 실태조사는 '직원 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등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할 수 있게 함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함 5.국유재산·공유재산 처분시 보고의무(신설) ○ 5·18민주유공자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함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시정조치(신설) ○ 승인조건 준수를 통한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7.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신설) ○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63조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65조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보훈처장은 제출요구를 할 경우 제출요구한 때로부터 4일 이상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부여하되, '법령에 따라 제출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명백히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회원·임직원 등 5·18민주유공자단체와 관련된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제출 외에도 제출요구하는 사항의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을 수 있게 함	
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사모운용사의 건전성 및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금융위원회)	규제 강화(신설) ①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 부과 ②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 2.펀드간 거래 요건 강화(강화)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3.펀드 관련 공시, 보고 강화(강화) ①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기재내용 확대 ②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변경 ③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확대 ④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	2.비중요 3.비중요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원회)	1.등록요건·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광고 심의(신설) ㅇ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등록요건 ㅇ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ㅇ 금융권 자율규제기구의 광고심의 권한 부여 2.영업 시 준수사항(신설) ㅇ 적합성 원칙: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경험 등 고려 ○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 확인 ○ 설명의무: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예) 대출 관련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나 담보 강요 등 ○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 비교 등 ○ 광고 규제: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행위 ○ 자료 유지·관리: 영업 관련 계약서류, 상품권유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등 유지·관리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1개 금융회사 전속의무, 재위탁금지 등 ○ 금융상품자문업자 영업준칙: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 열거 3.새로운 소비자 권리(신설)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서류심사만 실시하는 GMP심사 제출자료 추가(강화) 제6조제2항제1호·3호·4호·5호에 따라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심사대상 제조소는 기존 제출자료 외 ⑮생산국 관련 GMP 인증서 사본, ⑯제출자료가 제조소에서 또는 제조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대상 제조소는 기존 제출자료 외 ⑯제출자료가 제조소에서 또는 제조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추가 제출	1.비중요